

안전검사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(제79조제2호 관련)

1. 공통사항

가. 인력기준: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

| 안전검사 대상 | 관련 분야 |
|---|---|
| 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, 프레스, 전단기, 사출성형기, 롤러기, 원심기,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 | 기계, 전기·전자, 산업안전(기술사는 기계·전기안전으로 한정함) |
| 압력용기 | 기계, 전기·전자, 화공, 산업안전(기술사는 기계·화공안전으로 한정함) |
| 국소배기장치 | 기계, 전기, 화공, 산업안전, 산업위생관리(기술사는 기계·화공안전,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) |
| 종합안전검사 | 기계, 전기·전자, 화공, 산업안전, 산업위생관리(기술사는 기계·전기·화공안전,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) |

나. 시설 및 장비기준

1) 시설기준

가) 사무실

나) 장비보관실(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)

2)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.

3)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다.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.

2. 개별사항

| 번호 | 항목 | 인력기준 | 시설 및 장비기준 |
|----|--|---|---|
| 1 | 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,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|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)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| 가. 크레인, 리프트(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), 곤돌라,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1) 와이어로프테스터 2) 회전속도측정기 3) 로드셀(5톤 이상) 4) 분동(0.5톤 이상) |

| | | | |
|---|---|--|---|
| | |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(총 9명 이상)</p> <p>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(총 9명 이상)</p> <p>라. 용접·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</p> <p>마. 연간 검사대수가 21,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,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.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| <p>5) 초음파두께측정기</p> <p>6) 비파괴시험장비(UT, MT)</p> <p>7) 트랜시트</p> <p>8) 절연저항측정기</p> <p>9) 클램프미터</p> <p>10) 만능회로시험기</p> <p>11) 접지저항측정기</p> <p>12) 레이저거리측정기</p> <p>13) 수준기</p> <p>비고</p> <p>1. 1)부터 4)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</p> <p>2. 5)부터 7)까지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</p> <p>3. 8)부터 13)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</p> <p>나.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</p> <p>1) 초음파두께측정기</p> <p>2) 절연저항측정기</p> <p>3) 비파괴시험장비(UT, MT)</p> <p>※ 이동 출장검사 가능</p> |
| 2 | 프레스, 전단기, 사출성형기, 롤러기, 원심기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 | <p>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</p> <p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2)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</p>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(총 9명 이상)</p> <p>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</p> | <p>가. 회전속도측정기</p> <p>나. 정지성능측정장치</p> <p>다. 비파괴시험장비(UT, MT)</p> <p>라. 소음측정기</p> <p>마. 절연저항측정기</p> <p>바. 클램프미터</p> <p>사. 만능회로시험기</p> <p>아. 접지저항측정기</p> <p>비고</p> <p>1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</p> <p>2. 라목의 장비는 지부별로 보유</p> <p>3. 바목부터 아목까지의</p> |

| | | | |
|---|--------|--|---|
| | | <p>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(총 9명 이상)</p> <p>라. 용접·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</p> <p>마. 연간 검사대수가 22,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,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.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| <p>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</p> |
| 3 | 압력용기 | <p>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</p> <p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2)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</p>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(총 8명 이상)</p> <p>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(총 8명 이상)</p> <p>라. 연간 검사대수가 22,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,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.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| <p>가. 수압시험기</p> <p>나. 기밀시험장비</p> <p>다. 비파괴시험장비(UT, MT)</p> <p>라. 표준압력계</p> <p>마. 안전밸브시험기구</p> <p>바. 산업용내시경</p> <p>사. 초음파두께측정기</p> <p>아. 접지저항측정기</p> <p>자. 산소농도측정기</p> <p>차. 가스농도측정기</p> <p>카. 표면온도계</p> <p>타. 가스누설탐지기</p> <p>파. 절연저항측정기</p> <p>하. 만능회로시험기</p> <p>비고</p> <p>1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</p> <p>2.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</p> |
| 4 | 국소배기장치 | <p>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</p> <p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2)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</p> | <p>가. 스모크테스터</p> <p>나. 청음기 또는 청음봉</p> <p>다. 절연저항측정기</p> <p>라.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</p> <p>마. 열선 풍속계</p> <p>바. 회전속도측정기</p> <p>사. 만능회로시험기</p> <p>아. 접지저항측정기</p> |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</p> <p>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</p> <p>마. 연간 검사대수가 5,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,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.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| <p>자. 클램프미터</p> <p>비고: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</p> |
| 5 | <p>종합안전 검사기관</p> | <p>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)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<p>나.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,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,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다.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가 72,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,8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.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)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산업안전, 기계, 전기·전자 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,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2) 산업안전, 기계, 전기·전자 또는 화공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<p>라.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,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,0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.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)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</p> | <p>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</p> |

| | | |
|--|---|--|
| | <p>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) 산업안전, 기계, 전기, 화공 또는 산업 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연구·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2) 산업안전, 기계, 전기, 화공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| |
|--|---|--|

비고: 위 표에서 “실무경력”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연구·제작, 안전관리, 안전진단,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.